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서식] <개정 2026. 8. 25.>

# [ ]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[ ]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인가신청서

※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합니다.

| 접수번호 | 접수일 | 처리기간 20일 |
|---|---|---|

| | | |
|---|---|---|
| 기금법인 | 명칭 | 전화번호 |
| | 주사무소 소재지 |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대표자 | 성명(한글) (한자) | | 생년월일 |
| | 주소 | | 직책 |

| | | | | |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금법인 설립준비 위원회 위원 | 근로자측 | 성명 | | 생년월일 | | 직책 |
| | 사용자측 | 성명 | | 생년월일 | | 직책 |

| | | |
|---|---|---|
| 분사무소 | 대표자 성명 | 전화번호 |
| | 소재지 | |

| | |
|---|---|
|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 | [ ] 예 [ ] 아니오 |

「근로복지기본법」 제52조제5항·제86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[ ]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[ ]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대표 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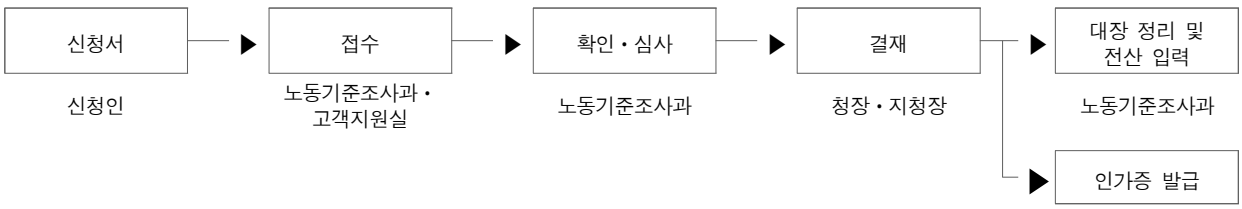
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○○지청)장 귀하

| | | |
|---|---|---|
| 첨부서류 | 1. 정관 1부<br>2.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의 재직증명서나 그 밖에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(근로계약서 등 소속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) 1부<br>3. 사내(공동)근로복지기금 출연확인서 또는 재산목록 1부<br>4.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1부 | 수수료 없음 |

## 작성방법

1. 대표자란에는 기금법인 대표이사의 인적사항을, 직책란, 근로자측란, 사용자측란의 직책란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직책을 적습니다.
2.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이 각 4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.
3.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은 분사무소를 설치한 경우에만 적습니다.
4.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탈퇴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란에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탈퇴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인지를 표시합니다.

## 처리절차


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